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한·칠레 FTA 등 17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7
의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
의 개정규정 중 5. 파나마를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
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
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 215 - 4476